04 담배소비세

※ '89년 방위세, 교육세,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

1. 개요

-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(담배사업법 제2조)
- 상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(煙草)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
2. 과세대상

○「담배사업법」과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담배

3. 납세의무자

- 1) 담배를 제조하는 자* 2)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3)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(여행자 등)
 - * KT&G, PM(필립모리스), BAT(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)

4. 납세지

○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,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







5. 세율

○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제조자.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

과세대상		과세단위		세 율
피우는 담 배	제1종 궐련	20개비당		1,007원
	제2종 파이프담배	1g당		36원
	제3종 엽궐련	"		103원
	제4종 각련	"		36원
	제5종 전자담배	①니코틴용액 1ml당		628원
		②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	궐련형: 20개비당	897원
			기타형 : 1g당	88원
	제6종 물담배	1g당		715원
씹거나 머금는 담배		"		364원
냄새 맡는 담배		"		26원

[※]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(20개비)당 641원 부과(종량제)

6. 납부방법

○ 제조자(수입판매업자)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(보세구역)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